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제7조에 따라 유효기간을 '2024년 8월 23일'에서 '2027년 7월 31일'로 연장하고자 함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 · 구조문대비표

국토교통부예규 제 403 호

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예규안

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 중 "2024년 8월 23일"을 "2027년 7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유효기간) 이 예규는「훈령	제3조(유효기간)
•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	
한 규정」(대통령 훈령 431호)	
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	
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	
을 검토하여야 하는 <u>2024년 8월</u>	<u>2027년 7월</u>
23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.	31일